

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“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”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.

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7월 6일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

1. 지정제도 개요

- 운영목적: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영양 요구를 고려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여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
- 관련근거: 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지정대상: 고령자의 섭취, 영양 보충, 소화·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, 형태, 성분 등을 조정, 제조·가공한 것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
- 지정기간: 지정일로부터 3년
- 지정효과: 고령친화우수식품(늘편푸드) 표시 사용 및 제품 신뢰도 제고

2. 주요일정

- 공고기간: 2026. 7. 6.(월) ~ 8. 26.(수) 18:00까지
- 접수기간: 2026. 8. 5.(수) ~ 8. 26.(수) 18:00까지
- 지정심사: 2026. 9. 7.(월) ~ 9. 11.(금)
- 지정공고: 2026. 9. 30.

3. 추진절차

구 분	내 용	일 정	비 고
공 고	제2차 신규지정 계획 공고	'26. 7. 6. ~ 8. 26.	
신청·접수	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(온라인*) *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 이용	'26. 8. 5. ~ 8. 26.	18시까지
서류심사	필수제출 서류 구비여부 검토	'26. 8. 27. ~ 9. 4.	
견본품 제출	지정심사용 제품 제출	-	개별 안내
지정심사	제품 실물(견본품·완조리), 제출 서류 종합 검토	'26. 9. 7. ~ 9. 11.	
결과안내	심사결과를 신청기업에 안내, 결과에 이의 발생 시 이의신청 접수	'26. 9. 14. ~ 9. 21.	
지정공고	신규지정 공고	'26. 9. 30.	
	약정서 체결·지정서 교부	'26. 9. 30. ~	

* 신청·접수 후, 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신청 자격

-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기업요건: 다음 각호의 제품을 보유한 기업(제조사 및 판매사 신청 가능)
 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
 - 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
- 제품요건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- 「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」에 따른 품목일 것
* 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
 -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품질 규격(영양성분·물성)에 적합할 것
 -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할 것

※ 신청 불가 품목: 「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」 제3조

- ① 주류, ② 영·유아용, 성장기용, 임산·수유부용 식품,
- ③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

- 제출한 서류는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** 서류검토 후 위원회를 통한 평가 추진,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
※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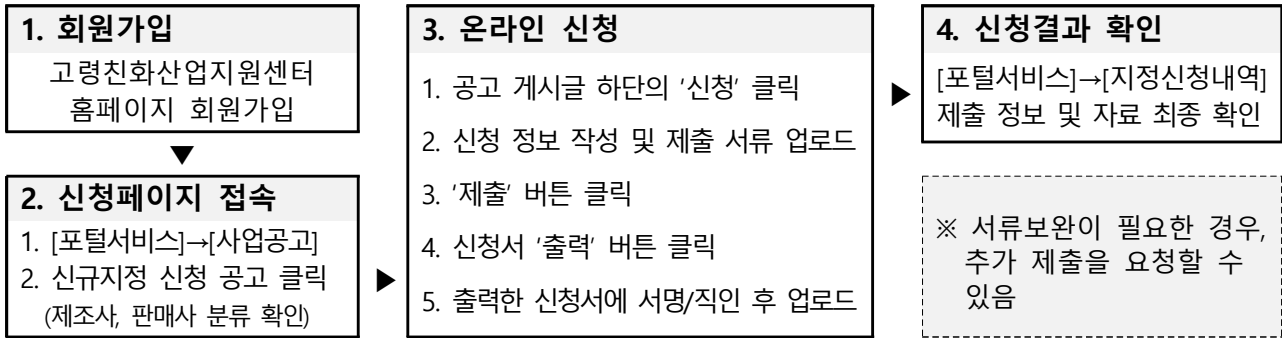
- ① 신청 서류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②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
- ③ 신청자가 부도, 휴폐업 등으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⑤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

5. 신청방법·서류

□ 신청방법: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(포털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※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(포털): <https://www.foodpolis.kr/seniorfood>

< 신청 절차 >



※ 주의사항

- ① 신청은 반드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, 마감 기한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②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허위사실 기재,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③ 접수 마감일에 신청이 집중되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 1~2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출서류

순	제출서류	비고
1	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	판매사/제조사 구분하여 제출
2	심사용 제품설명서	제품사진 포함
3	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(결과보고서) * 영양성분, 물성(경도, 점도)	1.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규격 적합여부 확인용 2.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성적서에 한함 3. 시험성적서(결과보고서)상 품목제조보고번호 또는 제품사진 확인 가능해야 함
4	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	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에 한함
5	용도 및 판매계획서	시설 납품용인 경우 제출
6	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	판매사로 신청 시 제출
7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서명 후 제출(2인 이상)
8	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	수입품인 경우 제출

- 신청기업은 신청 구분(제조사/판매사) 및 생산목적(소비자판매용/시설납품용)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신청기업이 2개 이상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, 일부 서류*는 1회 제출로 같음함. (단, 자료 변경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 요구할 수 있음)
 - *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,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, 용도 및 판매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제출서류에는 신청업체명 및 제품명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,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과 일치하여야 함
-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, 영업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HACCP 인증서(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보고서), 품목제조허가(신고)증은 신청기업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, 사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서류로 같음함

※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가. 신청서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,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(업로드)하여야 함
- 나. 고령친화식품 KS 인증 제품인 경우에도 품질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 필수
- 다. 신청제품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하며, 판매사 신청시에는 판매사(신청사)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라. 판매사(위탁생산) 신청의 경우 판매사 및 제조사(OEM) 간의 계약서, 거래확인서, 생산납품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에는 판매사 업체명, 제조사명, 심사 대상 제품명을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
- 마. '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'이 표기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 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6. 문의처 및 기타

- 지정심사 관련 문의: 식품진흥원 고령친화팀 063-720-0685, 0684
- 홈페이지 안내: <https://www.foodpolis.kr/seniorfood/bbsNotice/68958>
- ※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정보▶공지사항▶'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'

심사항목		세부 평가 내용
기본요건	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	○ 평가를 신청한 제품 실물이 시험성적서 및 제품설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가?
	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	○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사용성 평가,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요구를 사전 반영하였는가?
		○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테스트하였는가? * 시설 납품용은 편의성 및 조작성 관련 항목 평가 제외
기본 품질기준	○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기준에 적합한가? - KS의 단계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에도 1~3단계 부여. * 고령친화식품 KS 미인증 제품은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, KS 인증 제품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* 2개 이상 제품이 포함된 '반찬류·도시락류'는 식품유형별 평균 경도값이 가장 높은 원재료 2종을 선별하여 경도를 측정하고, 그중 최고 경도값을 단계 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. 다만, 해당 원재료가 기존 지정제품인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경도값을 적용한다. *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은 제품 1,000 kcal 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	
품질안전측면의 고령자배려	제조공정	○ 고령자의 저작, 연하, 소화·흡수 등의 능력을 배려하여 경도, 점도, 부착성, 영양, 소화성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제조공정이 있고, 그 제조공정을 적용한 결과가 고령자 배려에 적절한가?
	섭취안전성	○ 제품의 목적 및 섭취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자가 삼키기 용이한 크기로 제조되었는가?
		○ (반)유동식의 경우, 목넘김 시 흡착 또는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없는가? ○ 고령자인 소비자를 고려하여 제품의 삼킴시 이물감(경질, 연질) 관리를 실시하였는가?
편의성및조작성측면의 고령자배려	조작편의성	○ 전처리, 조리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편리를 고려하였는가?
		○ 사용자가 쉽게 포장을 개봉할 수 있는가?
		○ 포장의 취급 또는 개봉과정에서 신체의 손상 위험이 없는가?
		○ 취식용 도구가 포장에 포함된 경우,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?
	표시사항	○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글자크기 및 활자체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있는가?(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)
		○ 표시를 통해 연하 용이, 영양 강화 등 제품의 용도를 쉽게 설명하였는가?
		○ 조리 또는 섭취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가?(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)

붙임

제출서류 서식

<서식 1> 심사용 제품설명서

심사용 제품설명서

1. 제품 기본 정보

◇ 신청자 정보				
업 체 명	<i>(사업자등록증 업체명)</i>	영업등록번호		
주 소				
우수식품 담당자	성 명	부서/직급	연락처	이메일
담당자(주)				
담당자(부)				
◇ 제품 정보				
제 품 명	<i>(품목제조보고 제품명)</i>	식 품 유 형		
품목보고번호		원 재 료	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: % 수산물 및 그 가공품: %	
고령자 직접 사용 여부	○ / ×	용 량 (복수기재 가능)		
생산용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판매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납품용	고령친화식품 규격 단계	<input type="checkbox"/> 1단계 <input type="checkbox"/> 2단계 <input type="checkbox"/> 3단계	
고령자 배려 사항 (제품의 용도) ※복수체크 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 물성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양성분 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고령자 배려를 위한 주요 공정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순공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원료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원료절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열공정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화증기법 <input type="checkbox"/> 점도조절제 <input type="checkbox"/> 효소처리 <input type="checkbox"/> 수비드 기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
소비기한		기 타(인증)	<i>HACCP 인증, 고령친화KS 인증식품 등</i>	

2. 고령친화우수식품 품질관리

가. 사진(기본요건-실물과 제품 사진은 일치해야 함)

<전면사진>	<후면 사진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진 형태: 파일 형식 JPG, 정사각형(필수)으로 가로 1000픽셀 × 세로 1000픽셀(권장) - 사진의 배경화면은 흰색을 원칙으로 하되, 조명 활용 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밝기로 촬영 - 단, 제품의 색상이 흰색 배경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, 다른 배경색으로 대체할 수 있음 	
<영양성분 등 표기사항 부분 사진>	<내용물과 함께 들어 부자재 사진>
<조리 전 내용물 사진>	<조리 후 내용물 사진>

나.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 등 소비자 요구사항 및 반영 결과

- ※ 심사항목 중 기본요건 - 고령자 요구 반영여부 관련 (필수작성 요망)
- 설문, 자료조사 등 소비자 요구사항 파악 결과
 - 제품 반영결과
 - 제품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사항
- * 시설 납품용은 편의성 및 조작성 관련 항목 평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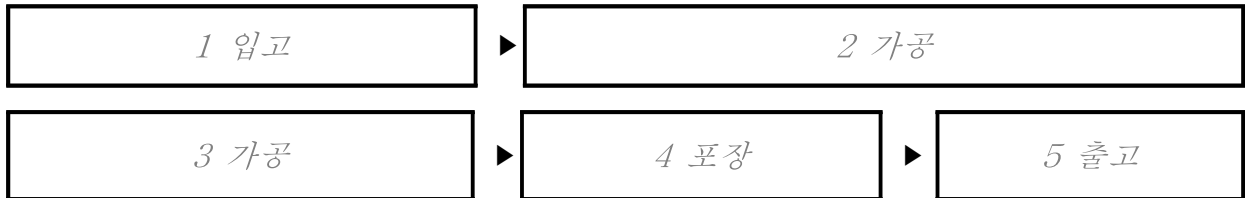
다. 기본품질기준: 단계/측정치 [필수작성]

- ※ 심사항목 중 기본요건 - 기본품질기준 관련
-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기준에 적합한 내용 기재

라. 제조 공정 [필수작성]

※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-제조공정 관련

1) 전체공정 (간략히 요약)



2) 고령자 배려요소: 물성 조절 or 영양성분 조절 등

3) 고령자 배려를 위한 공정

공정개요	공정명, 방법	
관리기준	온도, 배합, 경도, 점도, 영양성분 함량, 수분함량, xxx~000 수준 등	
목적	해당공정을 통한 고령자 배려 품질 구현 효과에 대한 설명 및 자료	
효과	일반공정 시 : (?)	해당공정 시 : (?)
효과의 적절성	해당공정 적용 결과의 고령자 배려 적절성	
품질검증	공인성적서(해당시), 관련 자료 등 별도 제출	
관련 자료(공정 사진, 성적서 등) 첨부 * 여백 부족 시 이면 추가하여 작성		

마. 크기

※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려자 배려 - 섭취안전성 1 관련

바. 흡착위험

※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려자 배려 - 섭취안전성 2 관련

요 소	연하장애(흡인성 장애)
관리기준	부착성 수치, 흡착 위험 감소를 위한 제품 개선 사항 (해당시)
품질검증	공인성적서(해당 시), 관련 자료 등 별도 제출

사. 이물관리

※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려자 배려 - 섭취안전성 3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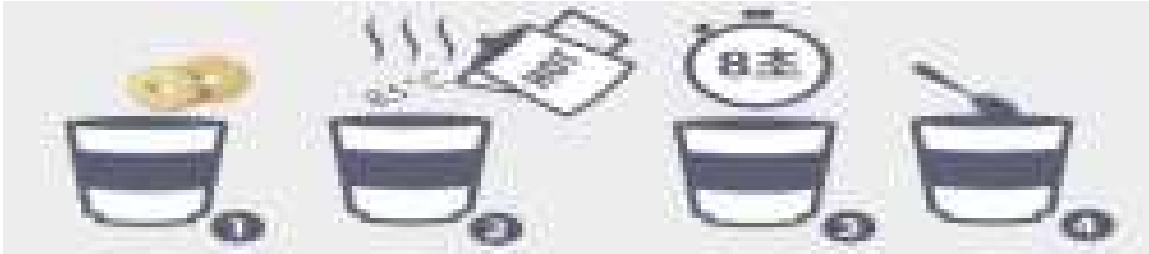
요 소	연질, 경질 이물 등
관리기준	
조치사항	해당 시 일반공정대비 추가 관리사항
증빙 사진	이물관리를 시행하는 증빙 사진(공정관리 혹은 검사 사진)

아. 기타 사항 제품의 크기 등 고려자 배려를 위한 공정 사항 작성

3. 제품 조리과정(해당하는 경우 작성)

- ※ 사용성평가 방법 및 작업수행 평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기술
- ※ 심사 시, 기술된 '제품 조리과정'을 참고하여 조리 예정

(예시)



(설명)제품을 용기에 넣어 온수를 채우고 00초 후 섭취.....



(설명)수분함량에 따라 점도가 달라질 수 있음

<서식 3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(식품)산업 활성화 사업 및 홍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소속, 직책, 연락처, 이메일	고령친화(식품)산업 활성화, 사업의 평가, 과제 수행, 고객만족도 조사, 홍보·마케팅	<u>3년</u>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(동의함 , 동의하지 않음)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순	성명	서명
1	대표자	000
2	담당자1	xxx
3	담당자2	□□□